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 (시정권고)

□ 민원 요지

-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 정보공개 요청

□ 신청 취지

- ○○면 ○○리 △△△-△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비공개하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됨
비공개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고 건축 허가 비용 등과 허가 연장 및 반려 사유 기타 관련 참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피신청인의 의견

- 신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전제를 했고, 정보공개와 직접 대상자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본인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하였음,

□ 사실관계

- 아산시 ○○○○관에 정보공개 청구(△ △ △ △. △. △.)

신청인은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관련(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 ○○○○나○○○○)의 원고 ○○○○○○○(주)의 사내이사로서 토지매수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 ▽ ▽ ▽ ▽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상 토지를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다수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면 ○○리 △△△-△번지 외 3필지 건축 허가 시 납부된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아산시 ○○○○관- ▽ ▽ ▽ ▽, 20 ▽ ▽. ▽. ▽.) → 아산시 ○○○○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라 판단하여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 시민옴부즈만실로 고충민원 접수(▽▽▽▽.▽.▽.)

아산시 ○○○○관에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 담당부서(○○○○관) 협의(▽▽▽▽.▽.▽.)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 ○○○○관을 방문하여 ○○○, ○○○○팀장과 민원인의 고충 및 고충 해소 방안을 협의함

○ 신청인은 □□□□□□□의 ▽▽로서 아산시 ○○면 ○○리 △△△-△번지 외 ▽필지 등 토지매수계약금 지급, 토지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비용 지급 등으로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등에 관련된 비용과 허가 연장 및 반려에 관한 참고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

□ 판단

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중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판단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국가기밀보호의 원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신청인은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아산시의 행정행위에 관련된 사실행위만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해 달라는 것으로서,

○ 아산시에서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호를 제시하였으나,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사법 영역에서 공개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비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가능한 한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정보공개처분 취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요지를 밝히면서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판결도 있는바,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정보공개 건과 관련성이 있는 신청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이라 판단되고 이를 공개 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공개 된 문건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한다고 보이는바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 제정 이유와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시정권고” 함

부당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합의 · 조정)

□ 민원 요지

- ○○동 ●●-●●번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 반환 요구

□ 신청 취지

- ▽ ▽ ▽ ▽. ▽. ▽. 위반건축물 추인을 위한 아산시 ○○동 ●●-●●번지 건축(대수선) 신고와 관련하여 아산시는 지붕 부분이 도로쪽 건축선을 침범했다고 반려했으나, 건축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이유는 196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아산시에서 부당하게 지적선을 변조하였기 때문이고 변조된 지적선을 사실과 같게 복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 또한 이행강제금의 1~3회분(2 ▽ ▽ ▽ ~ 2 ▽ ▽ ▽ 년)도 상속문제 때문에 본인 모르게 가족인 ▽ ▽ ▽ 이 납부를 했고, 그 후 ○○과에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3년 동안 부과하지도 않아 종결처리된 것으로 믿었는데 2006년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미수납됨에 토지가 압류된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음.
- 또한, □□-□□, □번지 쪽에서 1969년 구획정리 이전부터 ▽ ▽ ▽ 도로를 현재까지 무단 점유상황을 알고 있기에 아산시의 행정이 불법 행정이라 일관성있게 주장함.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도 돌려주기 바람.

□ 피신청인의 의견

- 신청인은 위반건축물(주민신고)에 대한 적발과 고발후에 추인을 위하여 ▽ ▽ ▽ ▽. ▽. ▽. 건축(대수선)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선 침범을 이유로 반려했바 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청인은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충청남도과 아산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 ▽ ▽ ▽년 당시 불법대수선 행위자로 신청인이 고발 조치 된 건으로 ○○○○과의 경계 복원 측량과는 별개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 및 「아산시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처리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임.

- 다만, 민원인이 이행강제금을 3회(▽▽~▽▽년) 납부 후 3년간(▽▽~▽▽년)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아 종결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가 유연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있으며, ▽▽년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미납부됨에 따라 토지가 압류된 것을 최근에 인지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등기 우편 수신 여부 및 공시송달 등에 대한 확인은 현재 어려운 상태임.
또한, ▽▽년과 ▽▽년에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되어 부동산을 압류 및 결손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목적은 불법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상기 민원의 경우 ▽▽년~▽▽년에 걸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1~3회분은 납부 하였으며, ▽▽년 위반건축물이 철거 후 개축되어 불법 부분은 조치 완료된 상태임. 불법 부분이 해소된 상태에서 과거 일부 체납(4회)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볼 사항임.

□ 사실관계

○ 아산시(○○과) 행정조치 내역

- ▽▽. ▽▽. ▽▽. 위반건축물 적발(주민신고-불법대수선)
△ 2차례 시정명령(건축주 △△△, 임차인 ▽▽▽)
△ 미시정에 따른 행위자(▽▽▽) 고발조치
- ▽▽. ▽. ▽ 건축(대수선 신고서 제출)
- ▽▽. ▽. ▽ 건축(대수선) 신고서 반려(건축선 침범)
- ▽▽. ▽. ▽ 이행강제금 부과(1회 금 626,900원 - 수납)
- ▽▽. ▽. ▽ 이행강제금 부과(2회 금 615,140원 - 수납)
- ▽▽. ▽. ▽ 이행강제금 부과(3회 금644,000원 - 수납)
△ 내부분서인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3회부과로 종결)로 기재
- ▽▽. ▽. ▽. 이행강제금 부과(4회 금 982,410원 : 미납)-(결손)
- ▽▽. ▽. ▽ 이행강제금 부과(5회 금 980,730원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
- ▽▽. ▽. ▽ 이행강제금 부과(6회 889,380원 - 미납 - (결손)
- ▽▽. ▽. ▽ 이행강제금 부과(7회 금822,000원 -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
- ▽▽. ▽. ▽ 이행강제금 부과(8회 금740,500원 - 미납)

△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압류

- ▽ ▽. ▽. ▽ 이행강제금 부과(9회 : 금673,800원 - 미납)

△ 천안 ○○동 ○○○-○○번지 토지압류

- ▽ ▽. ▽.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개축(사용승인)

□ 판단

가.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나. 판단 내용

- 아산시에서는 ▽ ▽. ▽. ▽ 불법건축물로 주민신고 된 건에 대하여 2차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을 하였고, 고충민원 신청인 ▽ ▽ ▽은 벌금을 납부한 후에 ▽ ▽. ▽. ▽ 추인을 위하여 건축물 대수선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선 침범(도로경계선 약 40cm)을 이유로 대수선 신고서를 ▽ ▽. ▽. ▽ 신청인에게 반려한 바 있으나 당시 위반건축물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로경계선을 침범했다고는 하나 공중에 대한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번지 전체가 ▽ ▽. ▽. ▽ 구획정리가 된 후 북쪽으로 약 1.8m 밀려 70년~80년대까지 건축이 된 지역이고 ▽ ▽년 당시 구획정리 전의 건축물(◆◆-◆◆번지)이 북쪽으로 ●●-●번지가 침범됐고, ○○-○, ◆번지는 ▽ ▽년경까지 국유지(한국전력)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 ▽ ▽ 도로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은 남쪽(철도쪽) ▽ ▽ ▽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변동은 없으나 지적 변조의 근거가 되었다고 ▽ ▽년 ▽ 월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 ▽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완성된 지적선과 근래 항공촬영에 의한 것과 비교해보면 일정부분 전체의 건축물이 약간씩 밀려서 건축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분(2021. 2. 15일 전 ▽ ▽ ▽ △ △ △ 면담)도 있다.
- 또한, 신청인 ▽ ▽ ▽은 위반건축물(○○동 ●●-●●)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회 ◁ ◁ ◁ 원, 2회 ◁ ◁ ◁ 원, 3회 ◁ ◁ ◁ 원의 이행강제금은 이미 납부(납부된 이행강제금은 ▽ ▽ ▽ 본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압류된 상속재산의 매도 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은 상속인 오빠 ▽ ▽ ▽이 신청인 모르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3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 ○○과를 방문 했을 시 이행강제금 3회 부과로 종결할 수 있는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님에도 건축법 시행령 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의한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신청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신청인이 이행강제금 건에 대해 종결처리가 된 것이라 믿도록 하였다.

- ▽. ▽. ▽. ▽.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4회 금<<< 원)과 2008. 5. 28. 부과된 이행강제금(6회 금<<< 원)은 결손처리하고 ▽. ▽. ▽. ▽. 부과된 이행강제금(5회 금<<< 원만 천안시 ○○읍 ○○리 ●●-●번지 토지를 ▽. ▽. ▽. ▽. 압류한 것에 대하여는 당연히 △△년과 △△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압류했거나 아니라면 함께 결손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일부만 압류하고 일부만 결손처리를 한 것은 행정처리의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자진해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바 이 위반건축물은 ▽. ▽. ▽. ▽. 기존 건축물 철거후 개축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목적이 이미 달성된 상태이다.
- 특히 200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아산시와 충청남도에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아산시장, 국장 등을 수시로 찾아 항의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에 관련됐던 수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과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도 판단할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행정 내부 문서에 “3회 부과로 종결” 이란 기재한 문서를 민원인이 보도록 하고 3년 동안 부과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믿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고충 민원으로 행정낭비와 향후 지속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납부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고충을 다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 결론

-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피신청인의 어려움과 행정낭비,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납된 이행강제금 부과와 압류처분을 취소하도록 합의·조정한다.